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06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박 정·서영석·장철민

김태선 · 허 영 · 이재강

차규근 • 김정호 • 윤준병

위성곤 · 김영환 · 한민수

박홍배 • 김영진 • 송옥주

황정아 · 권향엽 · 안도걸

소병훈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임호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,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 정하였음.

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.4조원이 미교부되었고, 더하여 특별 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, 지역현안,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%, 30%, 10%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.

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

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.

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(안 제9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금을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부금 조절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예산 계상) ①・② (생	제9조(예산 계상) ①・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		
	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		
	라 계상된 교부금을 해당 연도		
	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